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 내용

송신영 연구원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각 정책의 도입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들어가며

영유아보육법은 우리나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제정, 2004년 전문 개정된 이래, 시대적, 사회적 상황 및 필요에 따라 개정 작업을 거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보육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정책적 변화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009년 12월 8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및 2012년 1월 18일 발표한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무상 유아교육을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다. 본 글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이루어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의 위상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수행과 더불어 법적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과 8월, 12월 3차례에 걸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등의 명칭 변경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변경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어 보육교직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단축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가 급변함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던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2004년과 2009년에 실시되었던 보육실태조사는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3년 후인 2012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2009년 7월 3일)되기 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라. 다문화가족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무상 보육 특례 부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

1) 이하 본문에서 '가-라'는 2011. 6. 7. 개정, '마-야'는 2011. 8. 4. 개정, '자-차'는 2011. 12. 31. 개정된 내용임.

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우리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마.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유형 신설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에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어린이집의 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나뉜다.

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이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활용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2. 8. 5. 시행).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확대 및 어린이집의 가입 의무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하였으며,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차. 보수교육 강화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나누고 각각에 필요한 보수교육의 내용을 구체화였다. 즉, 종전 보육교직원으로 통칭하여 기재되어 있던 것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원장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 교사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보수교육이 강화되어 시행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2009년 12월 8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및 2012년 1월 18일 발표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가. 유아 무상교육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2012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국·공립) 또는 자문(사립)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다. 국·공립 유치원 회계 도입

유치원의 특성에 적합한 유치원 회계를 도입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회계 운영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하며,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의 유치원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유치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정보공시, 유치원 업무처리,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회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신설하였다. 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은 '12. 2. 28.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마.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유아학비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폐쇄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를 두어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였고,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유아학비 지원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바.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방식 변경

사립유치원 설립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유아 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립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사.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개념 명료화

현행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

제, 종일제로 나뉘어져 있던 개념을 삭제하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고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념을 단순·명료화하였다.

방과후 과정은 기존의 종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 활동을 기본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경우 지도·감독청의 행정지도 및 처분을 받게 된다.

4.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안전과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교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 역시 이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선진 유아교육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